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[6574]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[6576]/ 담당 백영기[6581]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2249호

시행일자 2017. 6. 15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」고시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(고시 제2017-97호, 2017.6.15.)「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」

2. 복지부는 상기 호로 「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」을 개정고시 한 바, 각 회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개정 주요내용

가.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함(안 제9조)

첨부: 개정고시 및 전문 2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